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7.2.8 대통령령 제1987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 2005.3.8, 2007.2.8>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실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출연금"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를 말한다.
8.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제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함에 있어서 응용 및 개발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8>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부처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을 실시하여 그 기획안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소요자원의 규모 및 인력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6.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제3조의2 (기술수요조사의 실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직접 연구기획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관점

[본조신설 2005.3.8]

제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신청<개정 2005.3.8>)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등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고전산망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제5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후보단을 이용하여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에서 배제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소속 직원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개정 2005.3.8>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및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 등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⑦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 우대의 기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제6조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그 전자문서와 함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에 갈음하여 당해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8>

제7조 (협약의 체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통보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1. 연구개발계획서
2. 삭제 <2005.3.8>
3.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과제의 최초 협약연도, 사

업구분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등을 알 수 있도록 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⑤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2007.2.8>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07.2.8>

제8조 (협약의 변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8>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해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
 7.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2.8>

제10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보다 증액된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게 할 수 있고, 개발연구단계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보다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2.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외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비중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간접경비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⑤삭제 <2005.3.8>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⑦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⑧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연구개발비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이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5.3.8>

⑩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제10조의2 (간접경비산출위원회)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간접경비산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경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경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간접경비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대학 및 비영리법인별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야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8]

제11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8>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은 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1.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 각호의 서식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집행한 금액의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제12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중 보안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의 서식 및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제13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된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중의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5.3.8>

②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3.8>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지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⑤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및 기술동향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7.2.8>

제14조 (평가에 따른 조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지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간평가·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7.2.8>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2. 당초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7.2.8>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2.8>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07.2.8>

⑦제4항에 따른 후속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2007.2.8>

제14조의2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최종보고서의 종합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8>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2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결과의 배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

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8]

제15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2.8>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연구기관인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2.8>

④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2007.2.8>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7.2.8>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2.8>

제16조의2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관련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및 조정의 결과와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별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정보망을 말하며,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8]

제17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②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2.8>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중 공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2.8>

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2.8>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1. 정부출연금 $\times 0.5$

2. (징수한 기술료 $\times$ 정부출연금 지분을 - 정부출연금) $\times$ (50퍼센트 이하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비율)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중 제1항에 따라 납부 및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1. 연구개발 재투자(「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되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기관운영경비

3.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중 50퍼센트를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의 연구원에 한한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중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 산입·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6.12.29>

제19조의2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의 마련·제공)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할 때에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연구윤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 및 방법
4.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8]

제19조의3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①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윤리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윤리지침을 반영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그 검증을 하고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간접경비 계상기준의 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8]

제20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8, 2007.2.8>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

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6.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7. 그 밖에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②제1항 각호의 사항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신설 2005.3.8>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④제3항의 제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⑤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신설 2005.3.8>

제21조 (세부규정의 제정·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8>

1. 삭제 <2005.3.8>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제17429호,2001.12.19>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다.

⑨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731호,2005.3.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3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술료 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

정은 이 영 시행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중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 한다.

⑨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872호,20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9호, 제9조제1항제7호,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2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단계평가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여 또는 출원·등록하는 결과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05.3.8>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제10조제1항관련)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 비중 현금부담 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 비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대기업 : 총연구개발비 의 50퍼센트이내 -중소기업 : 총연구개발 비의 75퍼센트이내 -참여기업이 2개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 내 -그밖의 경우 : 총연구개 발비의 50퍼센트이내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 퍼센트 이상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이상(다만, 참 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 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 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중 보유하고 있 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 비, 재료비, 시작품제작 에 소요되는 부품비(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 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이내)

[별표 2] <개정 2005.3.8, 2007.2.8>

비목별 계상기준(제10조제3항관련)

비 목	계 상 기 준
인 건 비	○내부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외부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한다),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여 비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기술정보 활동비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숙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소요경비 ○연구활동비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경비(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경비가 결정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에 충당하는 경비(내부인건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